

부속서 11-가
당사자별 경과기간

이 부속서의 목적상,

- 가. “경과기간”이란 당사자가 제11장(지식재산)의 특정한 규정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만료 전의 기간을 말한다.
- 나. “5년”과 같은 햇수는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시되는 그 당사자의 경과기간을 나타낸다. 그리고
- 다. 조, 항 또는 호는 자신의 경과기간 만료까지 당사자가 그 이행을 지연할 수 있는 특정한 규정을 나타낸다.

캄보디아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마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에 대하여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바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에 대하여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14조(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15조(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보호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19조(상표보호) (소리 표장에 대하여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22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2항가호 및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나호 | 수 있다. |
| 제11.48조(식물 신품종의 보호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62조(침해 상품, 재료 및 도구의 폐기) 제2항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64조(잠정조치) 제1항가호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74조(형사 절차 및 처벌) 제3항나호 및 다호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| 제11.75조(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) | 10년, 한 번만 5년간 연장될 수 있다. |

라오인민민주공화국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|------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마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에 대하여) | 10년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바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에 대하여) | 10년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사호, 마라케시 조약에 대하여 | 15년 |
| 제11.19조(상표보호) (비전형 표장에 대하여) | 15년 |
| 제11.22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2항가호 | 10년 |

말레이시아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사호 (마라케시 조약에 대하여) | 5년 |

미얀마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-|------|
| 제 11.9 조(다자 협정) 제 1 항가호부터 사호까지 (파리 협약, 베른협약, 특허협력조약, 마드리드 의정서, 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, 「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 및 마라케시 조약에 대하여) | 10 년 |
| 제 11.19 조(상표보호) (소리 표장에 대하여) | 10 년 |
| 제 11.22 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 2 항가호 및 나호 | 5 년 |
| 제 11.30 조(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) | 10 년 |
| 제 11.48 조(식물 신품종의 보호) | 5 년 |
| 제 11.70 조(직권 조치의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) | 3 년 |
| 제11.75조(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) | 10년 |

필리핀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1.19조(상표보호) (소리 표장에 대하여) | 5년 당사자들은 5년의 기간 만료의 연장을 위한 필리핀의 정당한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. 그 요청은 요청된 연장에 대한 사유 및 적절한 기간을 적시한다. |

태국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|------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마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에 대하여) | 3년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바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에 대하여) | 5년 |
| 제 11.10조(저작자,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) (실연자에 대하여) | 5년 |
| 제11.11조(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) (실연자에 대하여) | 5년 |
| 제11.44조(18개월 공개) | 5년 |
| 제11.62조(침해 상품, 재료 및 도구의 폐기) | 5년 |

베트남

| 규정 | 경과기간 |
|----|------|
|----|------|

| | |
|---|----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마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」에 대하여) | 3년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바호 (「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」에 대하여) | 3년 |
| 제11.9조(다자 협정) 제1항사호 (마라케시 조약에 대하여) | 5년 |
| 제11.19조(상표보호) (소리 표장에 대하여) | 3년 |
| 제11.22조(상표 등록 및 출원) 제2항가호 (상표의 처리를 위한 전자 출원 제도의 설립에 대하여) | 5년 |